

『모임통장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모임통장 서비스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제공하는 모임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하나원큐 앱"이라 함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에서 실행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서 은행이 banking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② "모임통장 서비스(이하 "모임서비스")"라 함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모임서비스 연결계좌의 잔액 조회, 회비내역 조회, 출금내역 조회 및 모임원 관리 등의 모임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총무"라 함은 하나원큐 앱에서 모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모임을 개설한 경우 해당 모임을 개설한 고객 또는 모임원 중 한 명으로서 총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모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④ "모임서비스 연결계좌(이하 "모임통장")"라 함은 은행에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모임의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임서비스에 연결하는 경우, 연결이 완료된 해당 계좌를 말합니다.
- ⑤ "모임원"이라 함은 하나원큐 앱에 회원가입을 한 고객으로, 총무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약관 및 모임 초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 ⑥ "이전 총무"라 함은 총무변경 기능을 통해 총무의 권한을 다른 모임원 중 한명에게 위임하고 모임원 자격이 된 자를 말합니다.
- ⑦ "거래내역 압축"이라 함은 무통장으로 거래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그대로 통장에 기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건수와 금액으로 요약하여 통장에 기장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⑧ “회비”라 함은 모임통장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총무 또는 모임원이 입금한 것으로 인식된 거래를 말합니다.
- ⑨ “회비내역 수정”이라 함은 모임통장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총무의 권한으로 특정 모임원의 회비로 변경하거나 이미 인식되어 있는 회비에서 제외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해당 기능은 단순 편의성을 위한 기능으로 수정된 회비내역은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해 질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가입대상

이 서비스의 가입대상은 하나원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한 고객으로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및 초대

- ① 총무가 모임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하나원큐 앱에서 모임서비스 전용 상품인 ‘하나모임통장’을 동시 개설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모임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총무는 인당 최대 10개의 모임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총무변경 거래 가능한 입출금 계좌는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1.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으로 사용 중인 경우
2.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또는 금융사기계좌 등록 등의 사고신고 계좌인 경우
4.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아래 지정한 상품이 아닌 경우 또는 그 외 기타의 사유로 모임통장으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모임서비스에 연결 가능한 상품)

저축예금/ 하나플러스 통장/ 급여하나 통장/ 주거래하나 통장/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영하나플러스 통장/ Young하나 통장/ 넘버엔 통장/ WINGO 통장/ (구)모임통장

- ③ 참여 가능한 모임 수 및 1개의 모임당 참여 가능한 모임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④ 모임총무는 모임서비스 관리 화면에서 초대 링크(URL)를 보내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원큐앱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하나원큐 앱에서 본 약관 및 동의서에 동의하고, 총무의 초대 요청을 수락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은 모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서비스는 변경되거나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총무의 모임 개설, 모임원의 초대 및 관리 서비스
2. 총무의 회비 관리 및 통지 서비스
3. 모임원의 모임정보(모임명, 모임 구성원 등) 및 모임통장 회비내역 조회 서비스
4. 총무 권한의 위임 및 모임통장 변경 서비스 (제6조 상세내용 참조)

제6조 총무변경 거래

①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총무의 권한을 모임원 중 한 명에게 위임하고 연결계좌(모임통장)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총무가 모임서비스 관리 화면에서 해당 모임의 모임원 중 한명을 지정하여 총무변경 신청
2. 신청을 받은 모임원은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를 연결계좌(모임통장)로 지정하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한 후 총무변경 신청을 수락
3. 총무변경 신청을 수락한 날을 포함하여 10일의 유예기간 발생
※ 단, 신청을 수락한 시점에 총무와 모임원 2명으로만 구성된 모임이라면, 유예기간 없이 수락과 동시에 총무변경 거래 완료
4. 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오전 9시에 총무변경 거래가 완료되며, 즉시 총무변경 사실을 모임원 전원에게 앱을 통해 알림

(예시) 12월 1일 총무변경 신청을 수락하면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이 되고,
12월 11일 오전 9시에 총무변경 거래가 완료됨

② 제1항 제3호의 유예기간 중 총무변경 거래의 쌍방이 아닌 다른 모임원은 총무변경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기간 중 한 명의 모임원이라도 반대의사를 제출할 경우 진행중인 총무변경 거래는 무효 처리됩니다. 은행은 총무변경 수락이 발생한 시점과 총무변경 예정일 하루 전 앱을 통해 모임원에게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과 총무변경 예정일을 알립니다. 또, 유예기간 중 모임원이 해당 모임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서비스 진입 전 전체화면으로 총무변경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의사표시 방법을 안내합니다.

- ③ 총무변경 거래가 완료되면 새로운 총무는 이전 총무의 모임서비스 관리 권한을 위임받게 되며, 이전 총무는 일반 모임원과 동일한 자격이 됩니다.
- ④ 총무변경 거래가 완료되더라도 이전 총무의 연결계좌 잔액이 새로운 총무의 연결계좌(모임통장)로 자동으로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직접 이체거래를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 상속, 기타 세금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⑤ 이전 총무가 동의할 경우, 기존 모임원은 이전 총무의 연결계좌 거래내역을 총무변경 거래 완료시점부터 최대 1년 동안 조회할 수 있으며, 동의기간 경과 후에는 거래내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단, 총무변경 거래가 완료된 이후 새로 참여한 모임원의 경우, 이전 총무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⑥ 총무변경 거래는 통합 월 1회만 허용되며, 매월 1일이 되면 초기화되어 다시 거래 가능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시 제한사항

- ① 모임서비스에 연결된 계좌(모임통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1.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이용
 - 2. 증권연계계좌 등 대외기관과의 연결계좌로 등록
 - 3. 모임서비스에 연결불가한 상품으로 전환하는 거래
 - 4. 명의변경 또는 거래내역 압축 거래
- ② 총무 또는 모임서비스 연결계좌(모임통장)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모임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총무 및 모임원 모두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고, 서비스 이용 재개를 위해서는 해당 중단 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총무 및 모임원에게 중단 사실을 통지합니다.
 - 1. 총무의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2. 총무의 사망 사실이 은행에 신고되어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모임통장이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거나 휴면계좌로 전환된 경우
 - 4. 모임통장에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 주의사고 코드가 등록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으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 5. 금융사기 관련 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전자금융을 통한 계좌 조회를 제한한 경우

제8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제1~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해지

- ① 총무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모임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하고자 하는 모임에 총무 본인을 제외한 모임원 모두가 모임서비스를 해지한 상태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모임원은 하나원큐 앱에서 모임나가기 기능을 통해 모임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총무가 모임원을 내보내기한 경우, 해당 모임원의 모임서비스 이용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당 모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전화, SMS, 이메일,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1.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안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모임서비스가 해지되는 경우, 모임통장의 연결도 해지되며 제7조 제1항의 제한사항은 자동 해제됩니다. 모임서비스가 해지되면 총무 및 모임원 모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지사실이 통지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① 본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총무는 해당 모임에 참여 중인 모임원이 없는 상태에서만 모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총무는 모임서비스에 모임원을 초대하고 모임원의 참여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 ③ 총무는 모임서비스에 참여중인 모임원을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 ④ 모임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총무에게 귀속됩니다.
- ⑤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회비를 포함한 계좌 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 발생한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모임원 및 회비 관리에 관한 권한은 총무 본인에게 있으며 압류 등 총무의 상태에 따라 모임통장 및 모임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제7조(서비스 이용 시 제한사항), 제8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제9조(서비스의 해지), 제12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모임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공 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은행은 모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지하고 신속히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총무 및 연결계좌 변경내역에 오류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 ⑤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임시조치 대상인 경우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합니다. (총무 및 연결계좌가 변경되어도 해당 계좌는 모두 지급정지 처리합니다.)
- ⑥ 제5항의 경우 지급정지계좌에 모임통장 서비스 연결이 해지 되었더라도 적용됩니다.
- ⑦ 은행은 담당자 실수, 시스템 오류 등을 포함한 은행의 귀책사유로 지급정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① 고객은 원활한 모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하고,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고객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고객이 본 약관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은행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불법행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 후 통지합니다.

제13조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동의 및 통지

- ① 총무가 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모임통장 서비스 관련 거래정보를 모임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 동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② 은행은 최초 동의 시점으로부터 1년 단위로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등에 대해 하나원큐 앱을 통해 재동의 받습니다.
- ③ 총무가 이전 동의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모임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다시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부터 모임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총무에게 포괄하여 통지합니다.

제14조 면책조항

- ① 총무는 거래내역 등 중요 사실을 제외하고 관리중인 모임에 대하여 모임명 변경, 회비내역 수정 등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총무가 자신의 책임하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은행은 총무가 입력·게시·전달한 정보의 정확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책임이 없으며, 총무가 입력 또는 게시·전달한 정보·사실의 신뢰도, 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총무 및 모임원 간 또는 그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거래,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하나원큐 앱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상관례에 따르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 법령 위반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12.0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됩니다.